

감리지적사례 FSS/2008-03 :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

- 쟁점 분야: 매출·매출채권
- 관련 기준: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
- 결정일: 2017년
- 회계결산일: '12.1.1.~'12.12.31.

1. 회사의 회계처리

A사(이하 ‘회사’)는 ○○○ 등을 제조,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년간 판매할 제품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선금을 받는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여 제품인도 후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. 이처럼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거래처에 적정수량의 제품이 인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. 그 결과 거래처의 교환요청에 따라 회사에 교환제품이 입고된 후 대체 제품이 아직 출고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출에 포함하여 총 계약금액만큼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. 또한, 일부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구매의사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출고하였음에도 이를 재고자산이 아닌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.

2.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

① 회사는 반환받은 제품을 다시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·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고, ②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금액보다 많은 제품을 인도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원가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.

3.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

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(수익) 문단 14 및 15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하고, 대부분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.

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인식하거나, 거래처의 구매의사수량보다 많이 출고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상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. 회사는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.

4. 감사절차 미흡사항

- ① 감사기준서 200(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) 문단 15, 감사기준서 500(감사증거)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,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,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.
- ② 회사의 계약 특성상 제품인도 후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환받은 제품의 매출을 차감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, 감사인은 거래처별로 인식한 매출액만큼 제품이 모두 인도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.

5. 시사점

제품의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 거래처에 적정수량의 제품이 인도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.

본 사례와 같이 제품의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차감되지 않은 반품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 제품의 이동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빙(연간 거래명세서 등)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거래처별로 인식한 매출액만큼 제품이 모두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